

진단 & 치료 센터(클리닉)를 위한 환자의 권리 장전

뉴욕 주 클리닉의 환자로서 귀하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

- (1) 나이, 인종, 피부색, 성적 취향, 종교, 결혼 상부, 성별, 성별 정체성, 출신 국가 또는 스폰서에 상관 없이 서비스(들)를 받을 권리,
- (2) 치료 중 사생활 보호를 포함하여 사려, 존중, 그리고 품위를 갖춘 대우를 받을 권리,
- (3)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될 권리,
- (4) 진료 시간 외 응급 커버리지에 대한 규정을 알게 될 권리,
- (5) 서비스 예상 청구 비용을 알고 그 사본을 받아 보며, 센터가 참여하는 의료 보험 및 병원 목록을 보고, 제3자 보상 해당 자격, 그리고 해당 경우에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치료에 대해 알게 될 권리,
- (6) 요청 시 본인의 계정 내 항목별 청구 명세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,
- (7) 본인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대리인으로 부터 환자의 진단, 치료 및 예후에 관한 완전하고 최신의 정보를 환자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받을 권리,
- (8) 본인의 의사로부터 비응급 절차, 치료,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시작하기 전에,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받을 권리. 이때, 정보에 입각한 동의에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개할 만한 최소한의 특정 절차, 치료, 또는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보의 규정, 이에 합리적으로 따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위험, 그리고 해당 경우 케어나 치료의 대안을 포함해야 함.
- (9) 법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치료를 거부하고, 그 행동으로 인한 의료적 결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을 권리,
- (10) 실험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,
- (11) 보복의 두려움 없이 센터 내 직원, 관리자, 그리고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(뉴욕 주 보건국)에게 정책 및 서비스 내 변경 사항을 추천하거나 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권리,
- (12) 제공되는 케어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, 센터가 그러한 불만을 조사하도록 할 권리. 센터는 환자가 요청할 경우,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환자나 그 지정 대리인에게 조사 결과로 발견된 내용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. 센터는 또한 환자가 센터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환자나 그의 지정 대리인에게 환자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(뉴욕 주 보건국)의 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릴 책임이 있음.
- (13)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기록에 대한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,
- (14) 본인의 의료 기록 내용을 법 또는 제3자 지불 계약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어떤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/또는 보건 시설에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공개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,
- (15) Public Health Law(공중보건법) 섹션 18 및 하위 파트 50-3에 따라 본인의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,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확인하십시오:
http://www.health.ny.gov/publications/1449/section_1.htm#access
- (16) 본인이 방문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우선권이 주어지는 가족 및 다른 성인에게 방문 권한을 부여할 권리, 그리고
- (17) 해당 경우 장기 기증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알릴 권리. 16세 이상의 사람은 NYS Donate Life Registry에 등록하거나 장기 및/또는 몇 가지 방식으로(의료 대리인, 유언장, 기증자 카드, 또는 기타 서명한 문서 등) 조직 기증에 대한 허가를 표시하는 서면 기록을 남겨 사망 시의 장기, 안구 및/또는 조직 기증에 대한 동의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음. 의료 대리인은 센터에서 제공 가능함,
- (18) 센터가 참여하는 의료 보험 및 병원의 목록을 열람할 권리, 그리고
- (19) 서비스 제공 후 청구될 예상 비용 청구서를 받을 권리.



Department
of Health